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가입 채널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금융감독원은 '07. 11월부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 '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' 등을 연이어 발표함.
 -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시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가입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음.
 - 이에 보험소비자들은 가입 채널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하여 이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고 있으나, 보험가입 채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지님.

-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계약 체결시 접촉하게 되는 주요 '보험가입 채널의 종류와 유의사항'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이 이들의 권한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 - 여기서 지칭하는 보험가입 채널이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로써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(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), 보험중개인사 등을 의미함.

-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모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,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모집종사자의 제한된 권한에 유의하여 스스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.

<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>

	계약체결권	고지수령권	보험료수령권	전속여부
보험설계사	×	×	×*	○**
보험대리점	○	○	○	×
보험중개사	×	×	×	×

* 단, 1회 보험료수령권은 인정되며, ** 예외적으로 교차모집 허용

(보험가입 채널의 종류와 유의사항, 금강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, 2/12)